

외국 입법·정책 분석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olicies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김강산

목 차

1. 들어가며

II. SVB 파산사태의 배경

- 1. SVB 파산사태 개요
- 2. SVB 파산사태의 주요 원인

Ⅲ.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

- 1. 예금 전액보호조치
- 2.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 3.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Ⅳ. 국내 시사점

요 약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2022년말 기준 미국 전체 은행에서 자산규모가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갑작스런 뱅크런 발생 및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파산하였다.

SVB 뱅크런 및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기채권 투자 위주의 자산운용,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 중소형 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현상을 들 수 있다.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즉시 SVB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조치를 통해 예금 고객들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BTFP 운영 등을 통해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뱅크런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의 중요성, 예금자 보호 강화 논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적시성 있는 유동성 공급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등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뱅크런(Bank-run)이라 한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예금을 단순히 맡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거나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예금 자들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마련해놓는 지급준비금은 예금자들이 맡겨놓은 금액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이라도 갑작스런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정 은행의 예금 지급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된 뱅크런은 다른 은행까지 확산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뱅크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은행업 규제를 실시하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 한도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은행의 예금 지급능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고도화된 현대 금융시스템에서는 일부 부실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뱅크런 발생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3년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2022년말 기준 미국 전체 은행에서 자산규모가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이하 'SVB'라 함)이 갑작스런 뱅크런 발생 및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파산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규모 뱅크런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만, SVB 파산사태 직후 금융당국은 금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1) 이와 관련하여 SVB 파산사태 당시 미국 정부에서 신속하게 실시한 예금 전액보호조치 등 정책 대응이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뱅크런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이 보고서에서는 오늘날 고도화된 현대 금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SVB가 갑작스런 뱅크런 발생으로 짧은 시간 만에 파산하게 된 주요 원인과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SVB 파산 이후에도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내 또 다른 중견 상업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이 파산하는 등 추가적인 뱅크런 발생에 대한 우려가 끝났

¹⁾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실리콘밸리은행 폐쇄 등 관련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2023.3.13.

²⁾ 황세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지본시장포커스』 2023-06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p.5.

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 우려도 제기되는 등³⁾ 뱅크런 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SVB 파산사태 및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SVB 파산사태의 배경

1. SVB 파산사태 개요

SVB는 1983년 10월 미국 Wells Fargo 은행원이었던 Roger Smith와 Bill Biggerstaff, 미국 스탠포드 교수 출신인 Robert Medearis가 실리콘밸리 지역 내 혁신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캘리포니아 주 은행으로 인가를 받아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 지역에 처음 설립되었다. SVB는 설립 초기부터 벤처금융에 특화한 전문은행으로서 실리콘밸리지역 내 벤처회사 및 벤처회사 임직원들이 맡긴 예금을 기초로 하여 유망한 벤처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당시 자산 규모가 약 1,8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말 기준 약 2,090억 달러(미국 내 은행 중 16위)에 달하는 실리콘밸리 지역 내 최대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2023년 3월 8일 SVB는 22.5억 달러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210억 달러 규모의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SVB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2에서 Baa1으로 강등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채권평가손실이 확대되는 등 SVB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왔는데, 2023년 3월 8일 손실 발생 공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SVB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2023년 3월 9일 SVB의 모회사인 SVB 금융그룹의 주가는 전일 대비 약 60.4% 하락하였으며, 동시에 급속한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날 하루에만 SVB에서 약 420억 달러 규모의 예금 이 인출되었다.

2023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 금융감독청은 SVB 폐쇄 및 예금 지급정지를 결정하였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라 함)를 관리인

³⁾ 김성훈,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범정부 대응단 "충분한 유동성 지원"」, "SBS Biz』, 2023년 7월 6일자 등



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40년의 역사를 가진 실리콘밸리 최대의 상업은행인 SVB는 보유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 공시 이후 48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파산하게 되었다.

2. SVB 파산사태의 주요 원인

SVB 뱅크런 및 파산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크게 장기채권 투자 위주의 SVB 자산운용, SVB의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 중소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SVB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크게 증가한 예수금의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나 Agency 모기지채권(MBS) 등 장기채권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세계 각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이 기간 유입된 투자자금을 SVB에 예치하여 예수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권데 SVB는 늘어난 예수금으로 미국 국채 및 Agency 모기지채권(MBS) 등 만기가 긴 장기채권을 주로 매입하였다. 5)

SVB의 이러한 장기채권 투자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자산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등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이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 점에 따라 SVB의 재무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권가격은 금리와 부(-)의 관계에 있고, 특히 장기채권일수록 금리인상 시 가격하락 폭이 커지는데, SVB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채 등 장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라 채권평가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금리인상 및 경기위축으로 자금 난에 직면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는데 SVB는 급증하는 예금인 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미실현 평가손실이 실현손실로 확정되었다.

채권매각 및 그에 따른 손실증가로 인해 예금을 맡긴 SVB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와중에 SVB는 2023년 3월 8일 채권매각으로 인한 확정손실 및 자본확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⁴⁾ SVB의 예금수신 규모는 2020년말 약 665억 달러에서 2021년말 1,258억 달러로, 2022년말 1,754억 달러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5) 2021}년 SVB가 매입한 미 국채 등 증권의 잔액은 1280억 달러인 반면,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660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2022년말 SVB의 자산대비 유가증권 투자 비율은 약 55%로 미국 내 모든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2022}년말 SVB의 채권평가손실은 1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는 SVB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결국 대규모 뱅크런 및 파산사태를 초래하였다.

둘째, SVB 예금의 대부분이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의 한도는 1인당(자연인, 법인, 정부기관 등) 25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⁷⁾ SVB의 경우 개인보다는 벤처기업 등 기업고객이 주를 이루다 보니 1인당예금 금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이 대부분으로, 2022년 말 기준 전체 예금 중 약 94%가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공적기관이 직접 예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이 다소 불안하더라도 예금을 인출해야 할 유인이 상대 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비보호예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을 돌려받기가 어렵 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 및 예금인출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SVB의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은 은행의 경영위기 시 대규모 뱅크런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2018년 이후 자산규모 2,5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 (Dodd-Frank)」을 제정하면서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로 분류하고 강화된 건전성 기준 (EPS: Enhanced Prudential Standards)⁹⁾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집권 시기인 2018년 5월 미국 의회는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EGRRCPA'라 함)」을 제정하면서 강화된 건전 성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량에 따라 EP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RB는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을 그 규모와 복잡성을 바탕으로 4개의 카테고리¹⁰⁾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마다 상이한 규제를 부과하는 '테일러링 룰(tailoring

⁷⁾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11(a)(1)(E)

⁸⁾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 2023, p.21.

⁹⁾ 은행·감독 당국 주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합 리스크관리, 유동성 요건 등



rule)'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자산 기준이 2,500억 달러 미만이었던 SVB는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형은행에 비해 완화된 스트레스 테스트¹¹⁾ 기준을 적용받는 한편,¹²⁾ 각종 유동성 규제($LCR^{13)}$ 규제, $NSFR^{14)}$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당시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¹⁵⁾

넷째, 디지털 뱅킹 활성화 및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뱅크런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빨라지는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IT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고객이 이를 인지하여 영업점 또는 ATM 기기에서 출금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반면, 현재는 SNS 등을 통해 은행에 대한 정보가 몇 시간 만에 확산하고, 이를 인지한 고객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 뱅킹 등을 활용해 출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뱅크런 현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정부가 뱅크런 및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조치를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졌다.

Ⅲ.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

1. 예금 전액보호조치

앞서 SVB 파산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SVB가 보유하던 예금의 대부분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객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SVB 파산사태 직후 예금자보호한도 규정(1인당 25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SVB 예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전액보호조치를 발표하였다.

예금 전액보호조치의 제도적 근거는 미국「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예외 규정 (Systematic Risk Exception)이다. 「연방예금보험법」 Sec. 13(c)(1)에 따르면, FDIC는 부보

¹⁰⁾ 카테고리 I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G-SIB), 카테고리 II는 총자산 7,000억 달러이상, 카테고리 III는 총자산 2,500억 달러이상, 카테고리 IV는 총자산 1,000억 달러이상의 은행이 해당한다.

¹¹⁾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입을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고 이에 대비해 얼마나 충분한 자본을 쌓았는지 분석하는 일종의 재무 건전성 가상 테스트로 볼 수 있다.

¹²⁾ 은행 주관 스트레스 테스트(company-run stress test)가 면제되었고, 감독당국 주관 스트레스 테스트(supervisory stress test) 주기도 매년에서 격년으로 완화되었다.

¹³⁾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이란 한달 기준의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LCR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¹⁴⁾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이란 유동성을 감안한 은행 보유자산 대비 안정적 조달자금(자본 및 부채)의 비율로, NSFR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¹⁵⁾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2023, p.92.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부보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상황으로 인하여 FDIC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대출, 예치, 자산이나 증권의 매입, 채무인수, 출연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예금보험법」Sec.13(c)(4)에 따르면, FDIC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16)

즉,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FDIC는 최소비용원칙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한 조치나 지원이 가능한데,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DIC가 부보금융회사를 정리함에 있어 최소비용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상황 및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FDIC가 조치나 지원을 취함으로써 악영향을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판단하여, FDIC 이사회 및 FRB의 의결(각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을 거치고, 대통령 협의를 거친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외 규정 적용 시 출자 등을 통한 부실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는 불가하고 반드시 정리할 의무가 있으며, 보호한도 초과예금 보호 등 최소비용이 아닌 방식으로 정리함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은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전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연방예금보험법」 규정에 근거하여 SVB 파산을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로 보아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FDIC가 SVB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FDIC를 통해 맡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예금지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금고객들의 심리적 불안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다. SVB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조치로 인한 FDIC의 손실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추가 예금보험료 부과로 충당될 계획이다. 17)

2.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SVB 파산사태 직후 미국 정부는 은행들이 모든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격 예금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이하 'BTFP'라 함)을 운영하였다. BTFP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국채나 주택제

^{16)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 13(c)(4)(G)

¹⁷⁾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5, p.53.



당증권(MBS) 등의 적격자산을 담보로 제출할 경우 해당 증권의 액면가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BTFP의 특징은 시가(fair market value)로 평가하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의 담보평가 방식과 달리 액면가(par value)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SVB가 가진 미국 국채 등 채권 자산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가치가 급락한 상태였는데, BTFP 이용 시 채권 가치가 액면가로 평가될 경우은행은 보유한 채권을 평가손실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격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보유자산을 손해 보며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BTFP를 통해 대출자금을 받아 예금주의 현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시중 은행에 대한 연준의 기존 대출제도인 재할인 창구 대출¹⁸⁾도 크게 증가하였다.

| 표 1 | BTFP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모든 미국 연방보험 대상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조합 및 신용조합 포함) 또는 외국계 은행의 지점 등으로서 제1차 신용(primary credit) 적격 기관
적격담보	미국 국채, 정부 기관채, 정부기관 MBS 등 안전자산 (연준 규정(12 CFR 201.108(b)) 상의 공개시장운영(OMO) 대상 채권에 한함)
대출규모	적격 담보의 가치 이내
적용금리	1년 OIS 금리 ¹⁹⁾ + 10bp
담보평가	액면가(par value)
조기상환	만기 이전 상환 가능(리파이낸싱 목적 포함)
대출기간	최대 1년
신용보증	재무부가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250억 달러 제공
상환청구	적격 대출자가 최종 상환
프로그램 기간	2024.3.11.까지 신청 가능

자료: FRB, 「Bank Term Funding Program-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3. 자료에서 재구성

3.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2023년 4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SVB에 대한 연준의 감독 및 규제에 대한 검증 결과보고서인 「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¹⁸⁾ 미국 연준의 재할인창구 대출은 은행 시스템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담보(정부채 등의 유기증권)를 제공하고 재할인창구를 통해 현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로 하루에서 몇 주 정도의 단기 대출을 위해 이용하지만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¹⁹⁾ OIS(Overnight Index Swap) 금리: 美 금융기간관 일정기간 동안 1일물 변동금리와 교환하기로 약정된 고정금리

Silicon Valley Bank」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8년 제정된 EGRRCPA 및 테일러링 룰(tailoring rule)에 따른 은행 감독 및 규제체계 개편은 SVB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비롯한 감독 및 규제 기준(standards) 을 낮추고 복잡성(complexity)은 높이는 한편, 덜 단호한(less assertive) 감독 방식을 장려함 으로써 SVB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하였음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FRB의 Michael Barr 부의장은 향후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보고서는 향후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 았지만. ● 급성장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규제적용의 신속 추진. ❷ 테일러링 룰 수정을 통한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③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강화, ❹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익을 반영해야 하는 은행의 범 위 확대 등 자본규제 정비, 🗗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대상 및 주기 재검토, 🐧 리스크 관리와 성과 급이 적절히 연계되기 위한 은행 경영진 성과급제 개선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Ⅳ. 국내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VB의 실적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던 뱅크런과 파산사태 이 후 미국 정부는 즉시 SVB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조치를 통해 예금 고객들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 하고, BTFP 운영 등을 통해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디지털 뱅킹과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으로 은행의 경영상 위기 발생 시점부터 뱅크런 및 은행 파산에까지 이르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빨라진 환경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SVB 파산사태 직후 미국 정부의 예금 전액보호조치나 BTFP를 통한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 급은 단순히 예금자를 보호하거나 은행의 예금 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선언함으 로써 뱅크런 발생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한 정책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뱅킹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SVB 파산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에 보다 노출되어 있는데, 향후 국내에 유사 상황 발생 시 특정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SVB 파산사태 당시 미국은 예금 전액보호조치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진화하였는바, 향후 뱅크런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또는 금융시스템 위기 시 예금 전액보호조치 제도화 등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6항²⁰⁾에 근거하여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1.2배)는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여러 국가가 시장의 안정과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은행업권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GDP와 경제적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5천만원으로 규정된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다. 또한, SVB 파산사태 당시 미 연준의 예금 전액보호조치와 같이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 등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별 법률(「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시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 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표 2 │ 주요국의 은행업권 예금자보호한도

구 분	1인당 보호한도	1인당 GDP IMF 2022 추정치	보호한도 비율
한국	5천만원	₩42,671,062	1.2배
일본	¥ 1천만	¥4,412,288	2.3배
영국	£ 8.5만	£ 37,645	2.3배
미국	USD 25만	\$ 75,180	3.3배

| 표 3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법안	주요 내용
조경태의원안 (의안번호 제2103859호)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 2114883호)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박성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724호)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 하도록 규정함
신영대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129호)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 하여 조정하도록 함
주호영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759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김한규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813호)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양기대의원안 (의안번호 제2120853호)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병욱의원안 (의안번호 제2121009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이성만의원안 (의안번호 제2121427호)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안 (의안번호 제2121787호)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 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강병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122480호)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 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만, 예금자 보호 강화는 뱅크런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와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예금자의 위험 선호성향 강화에 따른 은행 간 자금이동 효과, 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로의 예금보험료 부담 전가 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 차워의 적시성 있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SVB 파산사태 당시 미 연준은 특별 대출프로그램인 BTFP를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의 예금 지급 능력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저축은행 등)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바,²¹⁾ 향후 부동산 PF 부실 발생 등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에 관한 정책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넷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몰라이선스²²⁾나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뱅크) 도입²³⁾,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챌린저뱅크의 대표적 사례로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소개된 바 있던 SVB가 부정적인 내용의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산하였고 이후 미국 정부는 종전에 완화되었던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바, 이는 은행권 경쟁 활성화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²¹⁾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2023.3.23.

²²⁾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는 제도

²³⁾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유사하지만, 기존 금융서비스의 보수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사태에 대응하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²⁴⁾ 부과 및 스트레스완충자본²⁵⁾ 도입,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²⁶⁾ 도 입 등의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²⁷⁾ 향후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에 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²⁴⁾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v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²⁵⁾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²⁶⁾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항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²⁷⁾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2023.3.16.

참고문헌

- * 곽선호.「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신용불안 확대와 영향 」. 『금융브리프』제32권 제6호. 한국 금융연구원, 2023.
- * 곽선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추진 」, 『금융브리프』제32권 제10호, 한국금 융연구원, 2023.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실리콘밸리은행 폐쇄 등 관련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 의 개최 -」, 2023.3.13.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2023.3.16.
- * 이동익,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시스템리스크 대응권한」, 『금융리스크리뷰』 제20권 제1호, 2023.
- * 이재화,「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 019.
- * 장보성, 「3월의 미국 금융불안 그 이후」, 『자본시장포커스』 2023-10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2023.
-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2023.3.23.
-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SVB 사태 대응 관련 재무부·연준·FDIC 공동 성명서 및 연준 신규 대출제도(Bank Term Funding Program) 주요 내용」, 2023.3.12.
- *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SVB에 대한 연준의 감독 및 규제 점검 결과」, 2023.4.29.
- * 황세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3-06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 on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 2023.4.28.
-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
-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https://www.fdic.gov/regulations/laws/rules/index.html).
- * 미국 연방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
- * 미국 연준이사회, 〈https://www.federalreserve.gov/〉.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olicies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목록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38호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2023.07.13.	김도희
37호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	2023.06.13.	배재현
36호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2023.05.30.	허석재
35호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 의회표결 생략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2023.05.25.	오창룡
34호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 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	2023.05.24.	김태엽
33호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2023.04.14.	김선화
32호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2023.04.10.	전진영
31호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2023.03.20.	최은진
30호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2023.02.22.	임준배·조민주
29호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3.02.08.	허민숙
28호	미국「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02.07.	김태엽
27호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	2022.12.08.	조규범
26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2022.11.10.	최진응
25호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2022.10.21.	조규범
24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2022.10.05.	구세주·박충렬





